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2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9월 8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, 학원, 독서실, 식당, 이동차량 등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가능하므로 조례로 그 장소를 가정이나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가정 또는 학교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1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실태조사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. 다만,” 을 “실태조사를” 로 수정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②~③ (생략)	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<u>실태조사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, 다만,</u>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~④(현행과 같음)	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<u>실태조사</u> 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~④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<u>② ~ ③</u> (생략)	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 <u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<u>③ ~ ④</u> (현행과 같음)